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0377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윤영훈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유정수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25.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가합11621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283,768,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768,0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19행의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주식회사 F”으로 고치되, 그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피고로부터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이다. 또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며, 다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행 이후 급락하고 원고에 의한 임의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B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피고는 B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B의 예금계좌로 2018. 11. 13. 및 2019. 5. 27.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B이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즉시 원고에게 개설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두 번째로 1억 원이 이체된 다음 날인 2019. 5. 2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 날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실거래가격이 548,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 금전의 사용처, 위 금전거래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간적 관계, 위 금전거래의 규모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가액(274,000,000원 = 548,000,000원 × 1/2)의 유사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2018. 11. 13. 및 2019. 5. 27.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차용금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가액 274,000,000원, ② 원고에게 개설한 계좌의 현금 잔고 151,001,251원, ③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 9,640주의 평가금액 699,864,000원, 합계 1,124,865,251원이었고,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대출금 532,263,882원, ②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118,242,574원, ③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40,231,943원(고척동지점) 및 16,787,619원(강서지점), ④ 주식회사 M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신용대출금 44,106,879원(다만, 이 금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D 주가의 급락으로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후인 2019. 12. 26.을 기준으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채무액이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N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신용대출금 31,298,315원(다만, 이 금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D 주가의 급락으로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후인 2019. 7. 4.을 기준으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채무액이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 합계 약 982,931,212원이거나 이보다 적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B이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B의 적극재산은 850,865,251원(= 1,124,865,251원 - 274,000,000원)이 되고, 소극재산은 782,931,212원(= 982,931,212원 - 200,000,000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금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적극재산이 1,124,865,251원인데, 소극재산이 782,931,212원(982,931,212원에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이거나 이보다 적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적극재산이 850,865,251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극재산 782,931,212원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대물변제를 위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마. 한편 위 인정사실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락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B이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그와 같이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도 이로써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는 이로써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무자 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였는지,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법률행위 당시 보유한 재산이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거나 실제로 사후에 가격이 급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채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699,864,000원이었다는 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사후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부대항소를 통해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원고는, B의 적극재산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637,703,421원이고, 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근소하게 초과할 뿐이며, 나아가서 B의 추가적인 소극재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3개의 대형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변론재개의 사유로 내세우는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이미 변론종결 전에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어 주장·입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며, 원고가 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모색적 증거신청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에서 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서삼희, 판사 양시훈

[별지]

부동산 목록

(집합건물)

서울 구로구 H 외 1필지 I아파트 J동 제22층 K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구로구 H, L에 있는 I아파트 J동

철근콘크리트로 경사슬래브지붕22층 아파트

1층 504.57㎡

2층 504.57㎡

3층 504.57㎡

4층 504.57㎡

5층 501.21㎡

6층 501.21㎡

7층 501.21㎡

8층 501.21㎡

9층 501.21㎡

10층 501.21㎡

11층 501.21㎡

12층 501.21㎡

13층 501.21㎡

14층 501.21㎡

15층 501.21㎡

16층 501.21㎡

17층 501.21㎡

18층 434.56㎡

19층 434.56㎡

20층 434.56㎡

21층 434.56㎡

22층 292.2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구로구 H 대 12519.3㎡

2. 서울 구로구 L 대 1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2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84.92㎡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12533.1분의 33.606

- 끝 -